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	기관의 장
람	

제615호

2007년 12월 31일 월요일

차 례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예규 제74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운동경기부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 2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외
1개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82호 2008년도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7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1117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11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1118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예 규

인천광역시 서구청운동경기부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김 한 기

2007년 12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예규 제74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운동경기부 운영관리지침 일부개정지침

인천광역시 서구청운동경기부 운영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및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 및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문화공보실”을 “문화체육과”로, “문화공보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5조 제5항 중 “연간 10일 범위내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고, 휴가일수는 [별표1]과 같다”로 한다.

제10조 제1항 중 “1년 단위의 연봉으로 계약한다.”를 “연봉제로 하며, 감독은 3년 단위로 선수 및 조리사는 1년 단위로 계약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배점화하여 결정한다.”를 “배점하며, 감독의 경기력 점수산정은 선수 전원의 3년간 평균점수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1]을 [별표2-1]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선수(감독포함)가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여 4회 이상 대회에 출전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성 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제13조 제2항 중 “감독 및 선수가”를 “선수가”로 하고, “선수의 최고성적 1개만 지급한다.”를 “선수 중 최고 수혜 선수와 동일금액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입상보상금과 별도로 선수 및 감독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성적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1. 해당부 종합우승 시(감독 및 선수전원) : 30만원
2. 한국신기록수립 시 : 100만원
3. 아시아신기록수립 시 : 300만원
4. 세계신기록수립 시 : 500만원

제17조 제1항 중 “지급하며, 연봉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를 “「공무원연금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1]

특별휴가일수

구 분	휴가일수		
	종합우승	단체1위	개인1위
전국규모대회	3	2	1
전국체전	7	4	3
세계대회	10	7	5

※ 2개 이상 입상시 상위 입상에 대한 휴가 실시

[별표1]을 [별표2-1]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1]

인천광역시 서구청운동경기부 연봉등급 및 배점표

직책	등급	연봉액		비고
		점수	보수액	
감독	A	90점이상	46,000,000	
	B	80점이상90점미만	43,000,000	
	C	70점이상80점미만	40,000,000	
	D	70점미만	37,000,000	
선수	A	90점이상	40,000,000	
	B	80점이상90점미만	36,000,000	
	C	70점이상80점미만	32,000,000	
	D	60점이상70점미만	28,000,000	
	E	60점미만	24,000,000	
조리사			10,560,000	

별지 제7호서식 퇴직당시 소속기관 란의 “문화공보실” 을 “문화체육과” 로 하고, 결재란의 “담당, 실장, 국장” 을 각각 “체육청소년담당, 문화체육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결재 란의 “체육진흥담당, 문화공보실장” 을 각각 “체육청소년담당, 문화체육과장” 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결재 란의 “체육진흥담당, 문화공보실장” 을 각각 “체육청소년담당, 문화체육과장” 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	---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 81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외 1개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사업명: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도로명:독가촌지구 소3-1호선, 사업명:독가촌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1. 변경사유 :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10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1호선 및 소로3류4호선)
 - 【명칭】 백석지구 소3-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220m, B = 6m 및 L = 90m, B = 4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07. 6월 ~ 2007. 12. 31
 - 【변경】 2007. 6월 ~ 2008.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없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독가촌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1. 변경사유 :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2.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10-12번지 일원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1호선)
 - 【명칭】 독가촌지구 소3-1호선 도로개설공사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 = 220m, B = 6m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2007. 6월 ~ 2007. 12. 31 【변경】 2007. 6월 ~ 2008. 12. 31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변경없음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 -82호

2008년도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Ⅰ.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별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특정건물에 대한 가산율)
 - ⑤ 중·개축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08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 량(18,688종, 1.73% 인하)

-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시가표준액 ④과표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나. 기계장비(8,397종, 0.3% 인하)

-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시가표준액
⑤적용요령 ⑥산출예시

다. 선박(135종, 0.92% 인상)

-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선박 및 선박기관 시가표준액표 ⑤시가표준액 적용요령

라. 항공기(146종, 1.02% 인상)

-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잔가율 ④시가표준액표 ⑤ 적용방법

마. 시설물(1,191종, 6.62% 인상)

-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350종, 0.13% 인상)

-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시가표준액 ⑤적용방법

사. 입목(36종, 동결)

-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조사방법 ⑤적용요령 ⑥시가표준액

아. 어업권(140종, 3.49% 인상)

-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양식품중별표준시설내역

자. 지하자원(159종 0.04% 인상)

- ①용어정의 ②대상 ③용어해설 ④적용요령

차. 회원권(골프)(1종, 동결)

- ①용어정리 ②종류 ③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1】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승인신청 주요내용

2007년도 건물시가표준액	2008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당 490,000원	※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심의대상 아님.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액 사용)
○ 구조지수 - 9단계(지수 : 20~120)	○ 구조지수 ⇒ <u>조정(1종)</u> - 9단계(지수 : 20~120)
○ 용도지수 - 8단계(지수 : 30~135)	○ 용도지수 ⇒ <u>조정(2종), 세분화(1종)</u> - <u>8단계</u> (지수 : 30~135)
○ 위치지수 - 11단계(지수 : 80~130)	○ 위치지수 ⇒ (전년과 동일)
○ 경과년수별 잔가율 - 세부내역 생략	○ 경과년수별 잔가율 ⇒ (전년과 동일)
○ 가감산특례 가. 가산대상 : 24단계 - 특수설비 설치 건물 : 5단계 - 고층건물 : 3단계 - 대형건물 : 1단계 - 특수건물 : 2단계 -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 1단계 - 1급 한옥 : 1단계 - 2층이상 건물의 지상 상가부분 : 11단계 나. 감산대상 : 13단계 - 단독주택 : 2단계 · 주택 차고 : 1단계 · 특수구조 건물 : 3단계 - 2층이상 건물의 지하 상가부분 : 7단계	○ 가감산특례 ⇒ <u>일부 하향조정(6종)</u> 가. 가산대상 : 23단계 - 특수설비 설치 건물 : 5단계(동일) - <u>고층건물</u> : 2단계 · <u>5층~10층 : 5 → 0(적용제외)</u> · <u>공장 가산제외</u> - 대형건물 : 1단계 · <u>제조시설을 지원하기위한 공장 구내 사무실등 가산제외</u> - 특수건물 : 2단계(동일) -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 1단계(동일) - 1급 한옥 : 1단계(동일) - 2층이상 건물의 지상 상가부분 : 11단계(동일) · <u>오피스텔, 제조시설을 지원 하기위한 공장 구내사무실 등 가산제외</u> 나. 감산대상 : 13단계(동일) - 단독주택 : 2단계(동일) · 주택 차고 : 1단계(동일) · 특수구조 건물 : 3단계(동일) - 2층이상 건물의 지하 상가부분 · <u>오피스텔 감산 제외</u>
○ 증·개축 건물 - 세부내역 생략	○ 증·개축 건물 - <u>중층(반층) 60~65(신설)</u>
○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9단계	○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 : 9단계 (전년과동일)
	○ 건물시가표준액 자체조정범위 - 구조용도위치지수의 50%범위내 하향조정 - 가감산특례 50%범위내 가감산율조정
○ 시가표준액 일람표 - 세부내역 생략	○ 시가표준액 일람표(전년과 동일) - 세부내역 생략

【참고 2】

2008년도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내용

구 분 종류별		기종				2008 조정방법			2008 조정내역				
		계	2007	신규	삭제	계	조사 시가	전년 지수	계	인상	인하	동결	신규
계	총계	30,902	28,650	2,611	359	30,902	4,855	26,047	30,902	1,286	979	26,126	2,611
차량	소계	18,688	17,359	1,595	266	18,688	2,324	16,364	18,688	384	345	16,364	1,595
	국산	15,853	14,865	1,180	192	15,853	1,540	14,313	15,853	315	45	14,313	1,180
	외산	2,835	2,494	415	74	2,835	784	2,051	2,835	69	300	2,051	415
기계 장비	소계	8,397	7,743	685	31	8,397	1,211	7,186	8,397	290	236	7,186	685
	국산	4,986	4,395	615	24	4,986	1,074	3,912	4,986	240	219	3,912	615
	외산	3,411	3,348	70	7	3,411	137	3,274	3,411	50	17	3,274	70
선박	소계	135	135			135	135		135	52		83	
항공기	소계	146	139	7		146	7	139	146	3		136	7
	고정익	86	80	6		86	6	80	86	2		78	6
	회전익	60	59	1		60	1	59	60	1		58	1
시설물	소계	1,191	1,162	35	6	1,191	153	1,038	1,191	118		1,038	35
	레저	254	257	3	6	251	0	251	254			251	3
	저장	41	41			41	24	17	41	24		17	
	도크 접안	23	23	0		23		23	23			23	
	도관	74	74			74		74	74			74	
	급배수	124	124			124		124	124			124	
	에너지	596	564	32		564	3	561	564	3		561	32
	기타	79	79			79	17	62	79	17		62	
부수 시설물	소계	350	350			350	42	308	350	34	9	307	
입목	소계	36	36			36		36	36			36	
어업권	소계	140	123	17		140	52	88	140	22	13	88	17
회원권	소계	1,660	1,451	265	56	1,660	892	768	1,660	267	360	768	265
	골프	638	554	133	49	638	443	195	638	195	115	195	133
	콘도	692	590	103	1	692	410	282	692	69	238	282	103
	체육	323	300	29	6	323	39	284	323	3	7	284	29
	승마	7	7			7		7	7			7	
지하자원	소계	159	152	7		159	39	120	159	16	16	120	7

공 고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1117 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의1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1 규정과 관련하여 200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직권정정 대상토지,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07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개별공시지가 개요

- 단위면적 : 원/㎡
-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3필지
- 직권정정 개별공시지가 : 2필지
-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 1필지
- ※ 필지별 내역 별첨(토지정보과 비치)

2. 행정소송 안내

- 결정·공시한 지가에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 [☎ 032)560-484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 - 111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및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27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기간 : 2007. 12. 27 ~ 2008. 1. 11 (15일간)

2. 의견제출대상 및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2. 당사자	성명 (차량번호)	송재철외 18인 (“불임” 위반차량내역 참조)			
	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불임” 참조)			
4. 처분하고자하는내용		과태료 부과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			
5. 법 적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제37조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명	교통민원과
		주 소	인천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 (☎ 560-4872, FAX 560-4869)		
		기 한	2008년 1월 11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컴퓨터통신, FAX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yut2000@seo.incheon.kr)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도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반차량내역

연번	당 사 자		위 반 사 항			비 고
	성 명	주소(사용본거지)	차량번호	위반내용	위반법규	
1	김경수	인천시 서구 석남1동 512-2 4호	인천83다 6945	붕인탈락	제10조제3항	
2	김두천	인천시 서구 심곡동 329-15 (23/3) 롯데맨션 2동 202호	인천83나 3285	후 등화 콤비네이션램프 파손	제29조제1항	
3	이선심	인천시 서구 신현동 285-3 (3/4) 금성빌라 301호	인천30두 7505	붕인탈락	제10조제3호	
4	김유석	인천시 서구 연희동 732-7 (54/2) 대신아트빌라 2동 401호	09도9092	후면 클리어램프 및 전 면 불법등화설치	제29조제1항	
5	허금선	인천시 서구 연희동 736-11 (4/2) 금성타운 201호	21버9509	후미등 착색	제29조제1항	
6	(주)무지개 오에이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73-41	02무9907	붕인탈락	제10조제3호	
7	임정희	인천시 서구 연희동 688-1 (3/2) 연희점보주택 2동 201호	87가1268	화물칸 철재격벽 및 철재보호봉 임의제거 함	제34조	
8	김지연	인천시 서구 가정3동 543-37 (20/3) 드림빌라 6동 103호	인천35마 6550	번호판 훼손	제10조제항	
9	황성현	인천시 서구 가정1동 478-34 (12/5) 솔로아트빌 A동 201호	73우3620	철재범퍼 설치	제29조제1항	
10	함인철	인천시 서구 가정3동 560-47 (12/3) 대룡빌라 6동 302호	인천83가 7281	붕인탈락	제10조제3항	
11	송재철	인천시 서구 원당동 원당지구 69블록1외 2필지 (27/2) 엘지원당자이아파트 708동 1005호	28마5674	붕인탈락	제10조제3항	
12	(주)유니온 세라믹	인천시 서구 경서동 681-5	인천35머 8096	붕인탈락	제10조제3항	
13	변명환 외 1인(배세완)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86-50 (30/3) 삼선빌라 다동 201호	인천81마 3909	붕인탈락	제10조제3항	
14	이건우	인천시 서구 석남3동 494-6 (15/1) 롯데한일빌라 다동 302호	27너3004	철재범퍼 부착	제29조제1항	
15	김영민	인천시 서구 심곡동 285 (27/1) 대동아파트 102동 101호	인천73노 9282	붕인탈락	제10조제3항	
16	하수국	인천시 서구 석남동 522-3 (18/8) 보광오피스텔 601A호	인천83다 8442	불법구조변경 (격벽 제거)	제34조	
17	홍종면	인천시 서구 석남1동 468-3 (1/1) 낙원아파트 1동 104호	38다5553	후미등 착색	제29조제1항	
18	염연화	인천시 서구 가정2동 498-2 (28/3) 백남빌라 가동 202호	16마7379	앞,뒤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사용	제29조제1항	
19	김동진	인천시 서구 석남3동 561-33 (27/2) 유성주택 3동 201호	28러6798	전,후면 철재보호범퍼 설치	제29조제1항	